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불편사항 해소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길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근거와 전체구간 서비스제공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전거길, 숲길 도로구간 별도설정기준 대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전거길 도로명부여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제6호 신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자전거길 조성 확대와 더불어, 국민편의와 안전과 관련한 자전거길에서의 위치안내 필요성에 따라 도로의 유형에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자 함.

나. 도로구간 별도설정 기준 대상 확대(안 제7조제3항제4호, 제5호 신설)

현행 자전거길, 숲길 등은 하나의 도로구간에 기존 도로명이 부여된 구간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분절하여 여러개의 도로명을 부여해야 함에 따라 국민불편해소 및 편의증진을 위해 전체구간을 같은 도로명으로 서비스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복구간허용 및 해당구간에 대한 주소부여 기준 등 별도의 도로구간 설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제7조제3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숲길

5.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전거도로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① (생략)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등을 말한다. 1. ~ 5. (생략) <u><신 설></u> 6. ~ 8. (생략)	제3조(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7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부여 기준) ①·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구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7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부여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숲길 5.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

④ · ⑤ (생략)	<u>전거도로</u> ④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연 락 처	(044) 205 - 3559